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동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610

발의연월일: 2025. 5. 27.

발 의 자:장동혁·조배숙·김상훈

김소희 · 조지연 · 성일종

인요한 • 주호영 • 박준태

강명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방송공사는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에 의거하여 재난방송 주 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있으나, 일부 지역에는 지역방송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국지적 재난 발생 시 지역 주민의 소통창구 부재로 인해 정보 접근성 및 대응력이 저하되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.

이에 특별시, 광역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한국방송공사의 지역방송국을 각각 설치·운영하도록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재난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이루고자 함(안 제43조의2 신설).

또한, 지역방송국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한 국방송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 고,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54조제1항제11호 및 제54조제2항 신설 등).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4항을 삭제하고,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3조의2 (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역할) ① 공사는 공영방송으로서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,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한다.

② 공사는 재난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,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시, 광역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각각 한 개 이상의 지역방송국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54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 항) 중 "第1項第5號"를 "제1항제5호 및 제11호"로, "補助金을 지원할" 을 "보조금 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할"으로 한다.

11.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지역방송국 설치 및 운영과 이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

- ② 공사는 제1항제1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.
- 1. 보유자산의 효율적 활용
- 2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및 보조금
- 3. 공익적 목적의 기부금 및 후원금
- 4. 방송콘텐츠 및 프로그램 제작을 통한 수익
- 5.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공공프로젝트 및 기금
- 6.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43條(設置등) ① ~ ③ (생	第43條(設置등) ① ~ ③ (현행과
략)	같음)
④ 公社는 업무수행을 위하여	<u><삭 제></u>
필요한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	
을 거쳐 地域放送局을 둘 수	
있다.	
 ⑤ ~ ⑧ (생 략)	⑤ ~ ⑧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43조의2 (재난방송등의 주관방
	송사 역할) ① 공사는 공영방송
	으로서 「방송통신발전 기본
	법」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
	지정된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
	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, 재
	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
	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
	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한
	다 <u>.</u>
	 ② 공사는 재난 상황에 보다
	효과적으로 대응하고, 지역 주
	민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
	위하여 특별시, 광역시 · 도 및
	특별자치도에 각각 한 개 이상
	의 지역방송국을 설치・운영하

第54條(業務) ① 公社는 다음 各 第54條(業務) ① ------號의 업무를 행한다.

1. ~ 10. (생략) <신 설>

11. (생략) <신 설>

② 國家는 第1項第5號에 해당

여야 한다.

- 1. ~ 10. (현행과 같음)
- 11.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지역방송국 설치 및 운 영과 이에 필요한 재원의 조 달
- 12. (현행 제11호와 같음)
- ② 공사는 제1항제11호의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.
- 1. 보유자산의 효율적 활용
- 2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지원 및 보조금
- 3. 공익적 목적의 기부금 및 후 원금
- 4. 방송콘텐츠 및 프로그램 제 작을 통한 수익
- 5.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공공프로젝트 및 기금
- 6.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
- ③ ---제1항제5호 및 제11호--

하는 업무에 대하여 補助金을------보조금지원할 수 있다.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할----.③ (생 략)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